

사천시 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심사보고

제9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
제1차 총무위원회(2004. 10. 22)

1. 심사 경과

- 가. 2004. 10. 4 : 사천시장 제출
- 나. 2004. 10. 15 : 총무위원회 회부(의안번호 제 호)
- 다. 2004. 10. 22 : 제9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의결

2. 제안 설명 요지(세무과장 강대평)

가. 제안 이유

법령개정으로 현실과 괴리된 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 내용

1) 인용 관련 법령명 및 용어 정비

-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⇒ 5.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
-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⇒ 5.18민주화운동부상자

2) 관련 법령의 인용 조항을 정비

- 지방세법 : 제23조의16제1항 ⇒ 제234조의16제1항
- 전쟁기념사업회법 : 제5조제1호 내지 제5호
⇒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

다. 관계 법령

-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,
5·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, 전쟁기념사업회법, 지방세법.

5. 검토 보고 요지(전문위원 김태주)

- 본 개정 조례안은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게 내용을 정비 하고 잘못 표기 또는 인용된 부분을 바르게 정비하는 것으로서
 - 본 조례와 관련된 법령인 “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” 이 “5·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” 로 2004. 1. 20 개정되어 개정된 제명으로 표기하고
 - “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” 이 “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에관한법률” 로 잘못 표기된바 이를 바르게 고치며
 - 본 개정 조례안중 제11조제3호와 제21조의 개정은 잘못 인용된 상위 법령 조항을 바르게 정비 하는 것으로서
-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된 법령을 검토 한 바 원안 가결하여도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: 없 음

5. 토론 요지 : 원안 가결 의견

6. 심사 결과 : 원안 가결

7. 소수 의견 : 없 음